

‘도서관 지적자유’의 연원과 기본권적 기반(상)

정 현 태*

목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 1. 머리말 1.1 문제배경 1.2 개념정의 2. 도서관 지적자유의 역사적 연원 2.1 공공도서관의 역할변화 2.2 도서관 지적자유의 선언과 전개 2.3 도서관 지적자유의 수호활동 〈이상 본호 게재〉 (중) 3. 도서관 지적자유의 기본권적 기반 3.1 검열문제와 표현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2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 3.3 정보접근권 3.4 인터넷과 통신의 자유 (하) 4. 사례를 통해 본 도서관 지적자유 4.1 자료선정 정책에 대한 이의제기 4.2 제공도서의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4.3 도서관의 중립성과 사서의 자기검열 4.4 도서관 규칙과 노숙자의 도서관 이용권리 4.5 도서관 이용기록과 이용자 비밀보호 4.6 도서관 시설제공의 원칙 5. 맺음말
---	---

1. 머리말

1.1 문제배경

도서관활동의 기본철학을 이루는 중심주제는 이용자봉사이다.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만족스런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일은 바로 도서관 활동의 목적이자, 도서관의 자료와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를 보장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도서관 현장에서는 국가안보, 청소년보호, 미풍양속 등의 이유를 내세워 자료선정과 이용을 포함하는 자유로운 도서관 활동을 저해하는 갖가지 규제가 실재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용자의 건전한 자료이용을 제약하는 도서관 내 외부의 규제와 간접이야말로 도서관 활동의 실질적 저해요인으로서 도서관에서 지적자유의 신념이 요구되는 현실적 이유를 제공하고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huntj@dreamx.net)

있다.

본고는 이러한 도서관의 기본철학을 제약하는 저해요인들 중에서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와 자유로운 도서관 활동을 제약하는 제반여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지적자유의 원리를 우리나라 도서관 철학의 한 부분으로 선양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논의의 현저한 제한점은 지적자유의 이론적 원형이 구미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구체화된 이념이기 때문에 논의의 준거가 다소 국내 현실과 괴리되는 이상론에 치우치기 쉽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용자 권리와 도서관활동의 독자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것이 국내 도서관 현장의 실정을 간과한 관념적 담론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본고를 통해 도서관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철학적 기반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서관 활동과 관련하여 직면하는 개별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이후의 도서관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구하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1.2 개념정의

지적자유

일반적 의미로서 지적자유의 개념은 언론·출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적 개념과 관련하여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부의 권력적 개입, 즉 사상의 전달매체로서의 출판물에 대한 검열에 저항하는 것을 동기로 하고 있다. 다만 지적자유는 이러한 기본권적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각종의 사법적 혹은 사회적 압력의 첨예한 형식으로서 출판물에

대한 검열문제가 출발점을 이루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지적자유는 단순한 문헌매체에 대한 검열문제를 넘어서 자유로운 사상과 지식의 유통을 제약하는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 제약에 저항하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도서관 지적자유라는 개념이 태동한 미국에서는 지적자유란 개념에 대해 정확한 사전적 정의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 즉, 미국도서관협회의 평의회나 지적자유위원회, 지적자유사무국 등은 지적자유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문과 운영지침을 천명하였지만, 엄격한 정의를 내림으로 해서 생기는 한계를 피하고 지적자유에 유연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정확한 개념정의를 유보한 채 신축성있게 지적자유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자유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의의 성격으로 허용되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안에 요구되는 필요를 충족하도록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ALA OIF 1996, xix).

미국도서관협회 산하 지적자유사무국에서 발간한 지적자유 편람에서는 오늘날 지적자유 활동과 관련하여 관여하는 도서관 활동의 영역으로서

첫째, 모든 도서관자료에 대한 이용자접근에 관한 문제,

둘째, 자료선정과 관련한 사서직무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

셋째, 이용자비밀보호에 관한 문제,

넷째, 사서의 개인적인 민주적 사회활동참여 보장과 사생활 추구권에 관한 문제,

다섯째, 공공시설로서의 도서관과 사회변화 및 교육에서 도서관 역할에 관한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

당초 출판물에 대한 검열반대에서 출발하여 이용자의 자료접근권 보장과 사생활권 보호는

물론 사서의 직무활동과 도서관 역할에 대해서 까지 상당히 확대된 문제영역을 다루고 있음을 볼수 있다 (ALA OIF 1996, xix-xx). 이처럼 사서의 직무와 도서관활동으로까지 지적자유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었던 논리적 근거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도서관의 전반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바로 이용자로서 시민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는 시민과의 합의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도서관현상에 적용된 지적자유의 개념은 도서관이 소장한 혹은 소장하려고 하는 문헌에 대한 검열에 저항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근래는 도서관활동 전반의 정체성, 즉 도서관의 기본철학인 이용자의 자유로운 자료접근의 이념을 훼손하는 모든 제한적 규제와 외부적 개입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도서관의 지적자유란 이용자가 모든 자료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활동의 원리를 말하거나 혹은 도서관활동 전반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 대응하는 자율성을 말하기도 한다.

검열

일반적으로 검열은 정치, 종교, 풍속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자료에 대해 제작, 배포, 유통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검열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유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개별 사상의 부정적인 표현에 대해 제한적인 규제를 가하고 자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사상 및 표현의 제한을 강조하는 의미로, 비민주적인 제도적 사상통제라는 역기능성을 주로 표현하고 있다.

시민권적 권리의식의 형성과 시기를 함께하는 언론자유의 확장과정에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견해에 대한 자유로운 사상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식이 성장하면서 제도상의 제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는 보편가치의 유동적 속성에 따라 검열의 실태와 그 의미는 시대의 가치체계를 반영하는 척도로서 논란의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도서관의 경우에는 제한된 예산, 이용자 요구 및 장서구성 정책 등으로 인해 사서들로 하여금 일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료선택의 판단을 요구하게 되고, 이때 사회의 보편기준에 부합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유무형의 검열행위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검열은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옹호하는 사서들로서는, 지식과 정보의 광장으로서의 도서관의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서개인의 이념적 혹은 종교적 선입관으로부터 자료에 대한 검열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문적 윤리로서 요구받고 있다.

검열은 보통 협의의 의미로 제도적인 법률적 강제를 동반하는 개념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기도 하지만(한인섭 1997, 57-75), 도서관에서는 “자료이용에 대한 금지(ban), 방해(prohibit), 은폐(suppress), 배격(proscribe), 제거(remove), 레이블링(labeling) 등은 물론 자료의 일부를 삭제(deletion), 절단(excision)하는 것까지를 포함하여 일체의 접근을 제한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여 매우 광의의 해석을 채택하고 있다 (ALA OIF 1996, xx).

결국 도서관에서 검열의 의미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정보자료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제약하

는 모든 규제적 도서관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2. 도서관 지적자유의 역사적 연원

2.1 공공도서관의 역할변화

지적자유의 기본철학에 가장 부합되는 관종은 공공도서관이다. 공공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납세자인 주민이 이용의 주체이다. 도서관자료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야하고 모든 시설 운영의 지침이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 기본전제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도서관자료구성이나 시설이용에서 권리주체로 참여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도서관 운영에서 다수결의 강요나 적극적 소수의 압력으로 이어져 도서관 본래의 형평성이나 공익성의 원칙이 훼손될 때에는 도서관의 철학이 위협받게 된다. 이와 같이 우월한 사회적 지위나 수적 우세를 근거로 자료수집과 자료제공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외부압력에 대한 대응논리의 근간이 도서관의 지적자유 원칙이다.

공공도서관은 어느 일부 구성원만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체내에 포함된 다수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수에 의해 배척되는 소수의 의견까지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공공도서관이 견지해야 할 지적자유의 원칙이다. 표현의 자유에 의해 확보된 모든 사상의 표현에 대한 공동광장의 역할이 바로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된다.

공공도서관은 시민사회의 출발과 시작을 같이 한다. 계몽주의적 시민혁명의 성취로 근대적 의미의 시민들이 정치 경제적 주체로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며 어렵게 쟁취한 시민권, 즉 기본적

권리를 확대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근대적 공교육제도인 의무교육 실시와 함께 시작한 것이 바로 공공도서관의 설립이었다. 아동에 대한 기본교육을 일정연령까지 국가가 부담하기로 하고 오늘날과 같은 의무 교육기관으로서 초·중등 학교가 설립되고, 교양있는 시민의 다양한 지식욕구와 재교육의 개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 교육시설로서 지역마다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도록 도서관지원 입법을 제도화하였다. 공공도서관은 근대적 시민사회의 공공 기반시설로서 유용성을 인정받으면서 지역사회의 지식, 정보, 문화, 여가활동을 주도하는 문화적 구심체로 성장하였다.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리인 알권리를 보장하는 곳으로서 제도적 민주주의의 기반기관으로 설정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공공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무료로 자유롭게 시설과 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일의 신념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민주적인 시민사회의 기본철학을 수호하는 공공시설로서 형평성의 원리가 강조되며,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권을 보장하는 운영원칙으로서 지적자유는 도서관 활동 전반에 대한 자유까지도 포함하는 기본신념으로서 도서관 철학의 일단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두고 한때는 각기 다른 의도에서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교육적 기능을 우선하여 계몽기관으로서의 교화 기능을 역설한 계도적 입장의 주장이 있었던 반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외부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려는 목적에서 주장되었던 중도적 입장의 주장이 있었다. 지적자유와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의 역할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 국민에 대한 사상선도의 교화기

관으로서 국가권력의 계몽적 기능에 우선하였던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근년에 들어 공공도서관 본래의 지향 이념으로서 정보 및 사상의 광장으로서 민주적 시민권의 보루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鹽見昇 1991, 121-160). 특히 사회주의권 국가의 몰락과 함께 공공도서관의 사상선도적 기능에 대한 요구가 점차 약화되고, 후진국에서의 민주정치 구조로의 진전은 공공도서관 본래의 정보 광장으로서의 민주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확대시키고 있다.

2.2 도서관 지적자유의 선언과 전개

도서관이 지적자유를 기본철학으로 하고 있다 는 믿음은 그리 오래지 않은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하고 있다. 193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도서관 계나 사서의 검열에 대한 태도가 매우 모호하였다 (Geller 1976). 당시 일부 사서들은 도서관의 선도적 기능 즉 교육적인 교화기능을 강조하여, 사서가 적극적으로 자료선정에 개입하는 것에 관대한 분위기였다. 특히 1908년 당시 보즈 위크(A.E. Bostwick) 미국도서관협회 회장이 취임연설에서 밝히고 있듯이, 책에 대한 검열자로서 사서의 윤리적 사명감이 강조되는 분위기였고, 공공도서관의 계도적 입장에 대해서 적지 않은 사서들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었다. 지적자유에 대한 도서관의 입장은 간혹 사회변화를 예견하여 앞장을 선 경우도 있었으나, 전체사회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면에서 대중의 의견을 뒤따라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ALA OIF 1996, xx).

지적자유의 철학이 도서관계의 공동선언으로 발전되었던 1930년대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가 대공황의 경제시련 속에서 점차 새로

운 사회의 전망에 대한 정치이념적 대립양상으로 혼란을 겪던 시기였다. 한편으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제국주의적 군부파쇼가 우익 논리를 주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에트 러시아 신경제 정책의 혁신적 생산력에 고무된 진보세력의 변혁논의가 세력을 확산하는 가운데 각국마다 패권적 정치세력에 의한 검열이 첨예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던 시기였다. 1939년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의 권리선언' 채택은 이러한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검열현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도서관계의 공론으로 확인한 최초의 선언이었다.

사서들이 지적자유 문제를 의식하고 도서관의 민주적 기능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도서관 자료선정과 관련된 일련의 검열사건을 통해서였다. 1924년 카네기기금에 의해 설립된 미국의 공공도서관들이 진보적 성향의 자료를 배제한 채 특정자료만을 서가에 구비하려고 하자, 미국노동자연맹의 사서노동조합은 이를 검열에 준하는 선별 행위로 비난하고 미국도서관협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또한 1929년 미국 연방정부가 반체제적이거나 외설적인 외국도서에 대한 수입을 단속하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하자, 미국도서관협회는 검열행위의 주체가 사법부에서 세관원에게 부여되고 미국의 지성인을 불신하는 조처라며 협회차원의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주장하였다. 다만 1933년 나치독일에서 우익집단에 의해 주도된 분서행위에 대해 일부 사서들이 미국도서관협회 차원의 공식적 반대성명을 건의하였음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협회의 소극적 처신은 추후 상당한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1934년에는 한 유력한 시민단체가 특정 교육자료의 내용이 절망적 인생관을 표현하고 기존 정치경제체제를 부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캠프교재로

채택하는 것을 거부한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도서관협회는 그 시민단체의 겸열적 선정행위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당시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기도 하였다.

특히 1930년대 미국 도서관계의 지적자유에 대한 공론화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의 유명한 소설인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에 대한 일부 공공도서관에서의 선정거부 현상에서 비롯하였다. 전후 헐리우드 영화로 제작되어 널리 보급되기도 하였던 동 소설은 30년대 새로운 농경지를 찾아 나선 한 가족의 이주사를 통해 공황기 미국사회의 혁신주의의 노동운동의 실상을 묘사하였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지역의 많은 공공도서관 자료선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배척되었다. 소설 내용에 대한 거부감을 이유로 자료선정을 거부하는 공공도서관이 잇따르자 당시 미국도서관협회에서는 이를 명백한 겸열행위로 규정하고, 도서관자료의 선정에 있어 정치 이념적 의도를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도서검열 사건에 대처해 오면서 겸열에 반대하는 지적자유의 신념은 도서관계 전체의 공론으로 확산되었고, 1939년에는 '도서관권리선언' (Library Bill of Rights)의 초기 형태인 '도서관의 권리선언' (Library's Bill of Rights)을 미국도서관협회의 공식입장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어 1940년에는 오늘날 '지적 자유 위원회' (Intellectual Freedom Committee)의 전신인 '탐구의 자유에 대한 도서관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지적자유위원회' (The Committee on Intellectual Freedom to Safeguard the Rights of Library Users to Freedom of Inquiry)라는 다소 긴 이

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적자유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평의회에 권고하는 역할을 부여 받았다.

1939년의 선언은 지적자유에 관한 도서관계 전체의 입장을 천명한 것이었다. 이는 당시까지의 겸열현상에 대한 도서관의 입장을 명확히 하지 못한 채 당면한 사안마다 사서나 도서관이 개별적 견해를 주장하였던 것에 비해 한층 지적자유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도서관의 기본철학과 이념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었다.

당초 이 선언은 1938년 데모인 (Des Moines)공공도서관의 사서 스파ULDING(Forrest Spaulding)이 자관의 운영방침으로 발표한 성명에 몇가지 내용을 보완하여 미국도서관협회총회에서 승인한 것이었다. 그 내용 또한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자료를 수집할 것, 자료수집은 공정하게 할 것, 시설제공을 공정하게 할 것 등을 천명한 것이었다.

이 선언은 1948년에 전면 개정되어 오늘날의 권리선언의 모체가 된 도서관 권리선언(Library Bill of Rights)의 출발점이 된다. 이 선언에 이르러 구체적으로 당파나 교리상의 반대를 이유로 도서관 자료로부터의 제거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일체의 겸열에 대한 반대를 미국도서관협회의 공식입장으로 천명하고 있다.

초기의 선언에서는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위주로 하였으나, 이후는 사서들의 공정한 자료수집 및 제공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곧 이용자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라는 주장아래 사서와 도서관자체의 권리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진전되어 결국 이용자와 도서관활동 전반에 대한 도서관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1951년 도서관 권리선언에 대한 첫번

째 해설문으로, 영상·음성 매체에 대한 검열을 반대하는 ‘레이블링 성명’(Statement on Labeling)이 발표되었고, 1961년에는 이용자의 권리조항을 정식으로 선언문에 추가한 개정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어 1967년에는 해석의 논란이 있는 문구에 대한 수정과 함께 연령에 대한 제한철폐를 명시한 두번째 개정선언이 채택되었다.

1980년에는 그간의 변화된 사회환경을 반영

〈표 1〉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 권리선언: 정책 (ALA, Library Bill of Rights: The Policy)

미국도서관협회는, 모든 도서관이 정보와 사상의 광장이며, 아래의 기본방침이 모든 도서관봉사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 I. 도서와 기타의 도서관자료는, 도서관이 봉사하는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의 관심·정보·계몽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자료의 창작에 기여한 사람의 혈통, 경력, 견해를 이유로 자료를 배제해서는 안된다.
- II. 도서관은 최근 및 역사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표현된 모든 견해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당파 혹은 교리상의 반대를 이유로 자료가 금지되거나 제거되어서는 안된다.
- III. 도서관은 정보와 계몽을 제공하는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열을 거부해야 한다.
- IV. 도서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에의 자유접근을 제한하는 것에 저항하는 모든 개인 및 집단과 협력해야 한다.
- V. 개인의 도서관 이용권리는, 그들의 출생, 연령, 경력, 견해 등을 이유로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 VI. 전시공간과 집회실을 봉사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도서관은, 시설이용을 원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신념과 소속에 관계없이 공평한 기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ALA 평의회 1948.6.18. 채택, 1961.2.2., 1967.6.27., 1980.1.23. 수정, 1996.1.23. 재확인)

참고)<http://www.ala.org/work/freedom/lbr.html>

이후 지적자유위원회는 모든 변화되는 내용을 선언문의 본문에 포함하는 개정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선언문의 본문은 가급적 현재의 보편성을 표현하는 선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선언문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매 사안에 대한 새로운 해설문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지적자유 관련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해설적 각주를 달아 선언본문의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설문들이 채택되어 왔지만, 1980년 개정선언

하여 문제가 되었던 전문(前文)의 “민주적 생활 양식의 교육기관”이라는 표현을 대신하여 “정보와 사상의 광장”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도서관의 성격을 분명히 정리하였고, ‘사서적 여성지 위위원회’에 의한 성(性)차별적 용어의 척결 주장과 관련한 소위원회들의 검토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표1〉과 같은 현재의 개정선언이 발표되었다.

이후는 개별사안에 대해 미국도서관협회 차원의 정책을 천명하는 방식으로 권리선언 본문에 대한 별도의 해설문을 채택해 오고 있다. 1999년 12월 현재까지 1980년의 선언문 본문이 1996년 재확인되어 수정없이 지속되고 있다. 선언문의 본문과 달리 그간 지적자유 문제와 관련하여 협회에서 채택하여 천명한 각종의 선언이나, 방침, 해설문 등은 〈표2〉와 같이 연대기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2〉 미국도서관협회의 지적자유 관련 각종 해설문, 정책문, 지침 연표

〈해설문〉

- 1951 레이블링 성명(Statement on Labeling) : 1971, 1981, 1990 수정
 1971 이의제기된 자료(Challenged Materials) : 1981, 1990 수정
 1972 청소년의 자유로운 도서관접근(Free Access to Libraries for Minors) : 1981, 1991 수정
 1973 도서관장서 평가(Evaluating Library Collections) : 1981 수정
 1973 도서관자료의 개정(Expurgation of Library Materials) : 1981, 1990 수정
 1973 도서관자료에 대한 접근제한(Restricted Access to Library Materials) : 1981, 1991 수정
 1982 장서개발에서의 다양성(Diversity in Collection Development) : 1990 수정
 1982 자원으로서의 도서관 시행 프로그램(Library-Initiated Programs as a Resource) : 1990 수정
 1986 학교도서관 미디어프로그램에서의 자료와 봉사에 대한 접근(Access to Resources and Services in the School Library Media Program) : 1990 수정
 1989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디오테이프와 기타 비인쇄 매체에 대한 접근(Acces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to Videotapes and Other Nonprint Formats) : 1991 수정
 1991 전시공간과 게시판(Exhibit Spaces and Bulletin Boards)
 1991 집회실(Meeting Rooms)
 1991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편적 권리(The Universal Right to Free Expression)
 1993 성(性)차별 없는 도서관 자료 및 봉사에 대한 접근 (Access to Library Resources and Services Regardless of Gender or Sexual Orientation)
 1993 정보접근에 대한 경제적 장애(Economic Barriers to Information Access)
 1996 전자정보,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Access to Electronic Information, Services and Networks)
-

〈정책성명, 지침〉

- 1953 독서의 자유(The Freedom to Read) : 1972, 1991 수정
 1971 도서관기록의 비밀유지에 관한 정책(Policy on Confidentiality of Library Records) : 1975, 1986 수정
 1973 정부의 위협에 관한 정책(Policy on Governmental Intimidation) : 1981 수정
 1983 도서관자료에 대한 우려에의 대처(Dealing with Concerns about Library Resources)
 1988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의 도서관 및 정보 접근에 관한 결의(Resolution on Access to the Use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by Individual with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1991 도서관이용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정책(Policy Concerning Confidentiality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about Library Users)
 1993 이용자행동과 도서관이용에 관한 정책 및 절차의 개발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nd Procedures Regarding User Behavior and Library Usage)

1994 도서관의 자료, 봉사, 시설에의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규칙, 절차의 개발과 실시에 관한 지침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Affecting Access to Library Materials, Services and Facilities)

1997 도서관에서의 여파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결의(Resolution on the Use of Filtering Software in Libraries)

1998 공공도서관 인터넷 이용정책개발을 위한 지침과 고려사항(Guidelines and Considerations for Developing a Public Library Internet Use Policy)

참고) <http://www.ala.org/oif.html>

도서관 지적자유와 관련하여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선언을 채택하고 미국에 벼금가는 활동을 보이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다. 일본의 도서관 활동에 대한 지적자유 선언 역시 전후사회의 보수화와 진보적 사상에 대한 탄압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이른바 일본적 매카시즘의 무모함에 대항하고자 채택하였던 것이 바로 1954년 도서관 활동의 중립성을 명분으로 천명한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이었다. 즉, 패전후 미군정기의 미국문화에 대한 강력한 동화정책을 겪은 일본은 '도서관의 자유' 선언을 통해, 1950년대 초 좌우익의 이념대결, 한국전쟁, 그리고 미국 매카시즘 등의 영향으로 기세가 오른 우익세력의 검열공세로부터 도서관 자료의 방어공간을 확보하였다.

일본도서관협회는 미국의 도서관 권리선언을 모형으로 하여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의식이었던 '알자유'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도서관 활동의 당위와 근거를 표방한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당시는 도서관발전이 부진하여 현재와 같은 이용자 지향적인 밀착된 봉사체제를 갖추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현장의 사서들이나 관계자들 대부분이 이 선언을 매우 추상적인 이상론으로 간주하여 현실적인 지침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선언 채택 이후 교육 현장에서 각종의 지적자유 침해사례와 국가권력

에 의한 출판문화 규제사건이 수차례 발생하였지만, 실제 도서관계는 이러한 지적자유의 침해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도서관 현장업무에서의 지적자유 증진 노력은 뚜렷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3년 '야마구치(山口)현립도서관'에서 발생한 도서유기사건(4.3참조)을 통해서, 도서관의 자유선언에 반하는 사서의 자기검열 행위 때문에 도서관 이용자와 독서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세간의 비난을 계기로 도서관계 내에서 자성의 여론이 형성되었다. 결국 1974년에 개최된 전국도서관대회에서 1954년의 선언이 공론으로 재확인되었으며, 선언의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책위원회의 구성이 결의되었다. 이해 말 일본도서관협회 내에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선언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하여, 도서관의 주체적 적극성을 강조하고 이용자의 사생활권 보호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여 1979년 협회총회의 결의를 거쳐 <표3>와 같은 현재의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한편 국제도서관 연맹(IFLA)은 1997년 코펜하겐 연차총회를 계기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도서관의 지적자유에 대한 문제를 선양하는 기구로서 '정보접근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위원회' (CAIFE : The Committee on Freedom of

〈표 3〉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1979)

도서관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알 자유를 갖는 국민에게 자료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한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서관은 다음의 것을 확인하고 실천한다.

제1 도서관은 자료수집의 자유를 갖는다.

제2 도서관은 자료제공의 자유를 갖는다.

제3 도서관은 이용자의 비밀을 지킨다.

제4 도서관은 모든 검열에 반대한다.

도서관의 자유가 침해될 때, 우리들은 단결해서 끝까지 자유를 지킨다.

사단법인 일본도서관협회 (1979년 5월 30일 총회 결의)

(참고) <http://wwwsoc.ac.jp/jla/ziyuu.htm>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의 사무국을 코펜하겐에 마련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적자유의 이념을 선양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동 위원회는, 1997년 제63차 국제도서관연맹 집행위원회가 '도서관자료의 검열'과 '도서관 자료와 봉사에 대한 이념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등등의 압력을 통한 정보 접근의 제한과 사서들에 대한 업무상의 제약' 등에 대한 지적 자유 문제에 관해서 국제도서관연맹에게 정책 자문을 하는 산하 위원회로서 설치를 총회에 건의하고, 총회가 이를 결의하는 형식으로 국제도서관연맹 내에 하나의 위원회로 설치되었다. '정보접근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위원회'에서 마련하고 1999년 3월 헤이그에서 열린 IFLA 이사회에서 승인된 '도서관과 지적자유에 관한 성명'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 [도서관문화] 99년 3.4월

호 참조)에서는 유엔 인권헌장이 규정한 지적자유를 수호하고 선양하는 것을 국제도서관연맹 도서관활동의 원리로서 채택하고, 모든 회원들이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999년 현재 도서관의 지적자유에 대한 선언적 성명을 천명하고 이 문제에 관심을 표현한 국가는 〈표4〉와 같이 호주, 캐나다, 영국 등을 비롯하여 7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협회 내에 전담기구를 운영하며 지적자유 문제에 대처하려는 국가가 점차 늘어나리라 예상되고 있다.

2.3 도서관 지적자유의 수호활동

국제적으로 도서관 지적자유의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도서관협회

〈표 4〉 지적자유관련 성명발표 국가(1999년 12월 현재)

호주 - 독서의 자유성명 : 1971 채택; 1979, 1985 수정(Statement on Freedom to Read)

캐나다 - 지적자유 입장 성명 : 1974 채택; 1983, 1985 수정(Intellectual Freedom Position Statement)

- 연구도서관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성명 : 1986 채택(Statement on Freedom of Expression in Research Libraries)

- 일본 -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에 대한 성명 : 1979 채택(Statement on Intellectual Freedom in Libraries)
- 뉴질랜드 - 정보접근에 대한 성명 : 1978 채택(Statement on Access to Information)
- 도서관에서의 검열에 대한 성명 : 1980 채택(Statement on Censorship in Libraries)
- 영국 - 지적자유와 검열에 대한 성명 : 1963 채택; 1978, 1989, 1997 수정(Statement on Intellectual Freedom and Censorship)
- 정보접근에 대한 성명 : 1997 채택(Statement on Information Access)
- 미국 - 도서관 권리선언 : 1948 채택; 1961, 1980, 1996 수정(Library Bill of Rights)
- 학술도서관을 위한 지적자유원칙 : 1999 채택(Intellectual Freedom Principles for Academic Libraries)

(참고) <http://www.faife.dk/ifstat/ifstat.htm>

는 산하에 지적자유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활동조직을 발전시켜 왔는데(〈표5〉 참조), 이들 관련기구들은 독자적 활동영역과 조직을 배경으로 지적자유의 문제에 기여하여 왔다.

먼저 지적자유 관련 기구들 중 1940년에 가장 먼저 발족한 '지적자유위원회'의 임무에 대해서는 미국도서관협회의 개정성명에서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1조와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권리선언에 의거하여, 도서관이용자, 도서관,

고 있다. 즉 동 위원회는 지적자유관련 문제에 대한 협회의 정책을 미국도서관협회의 평의회에 권고하는 것을 제일의 임무로 하고, 평의회는 동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적자유 문제에 관한 협회의 공식입장을 정책성명이나 해설문, 결의문, 지침 등으로 채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967년 발족한 '지적자유사무국'은 지적자유와 관련한 협회의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담당 기구이다. 사서들에게 지적자유 개념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지적자유와 관련된 각종 교육

〈표 5〉 미국도서관협회 산하 지적자유 활동기구 설치 연표

- 1940 지적자유위원회(The Intellectual Freedom Committee)
- 1967 지적자유사무국(The 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
- 1969 독서자유재단(The Freedom to Read Foundation)
- 1970 리로이 메리트 인도주의기금(The LeRoy C. Merritt Humanitarian Fund)
- 1973 지적자유원탁회의(The Intellectual Freedom Round Table)
- 1994 지적자유활동정보망(The Intellectual Freedom Action Network)

사서 등의 권리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권고하는 것, 또한 지적자유와 검열 문제에 대해서 지적자유사무국과 협회 내 관련부서들과 밀접히 협력하는 것"을 소임으로 밝히

용 출판물과 정보성 간행물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도 한다. 동 사무국은 지적자유와 관련한 제반 활동의 중심기구로서 '독서자유재단'이나 '리로이 메리트 인도주의기금'

등 협력단체의 행정실무에 대한 지원이나 자문은 물론, 월간 [지적자유활동소식]과 격월간 [지적자유소식]과 같은 정기간행물의 발간, {지적자유편람(intellectual freedom manual)}, {금서주간용도서목록(banned books week resource book)}, {검열과 선정(censorship and selection)}, {도서관에서의 비밀유지(confidentiality in libraries)} 등과 같은 교육자료를 간행하는 출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독서자유재단'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고 개인의 독서자유를 위해 활동하는 도서관 및 관련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1969년 미국도서관협회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동 재단은 정당하게 표현의 자유나 독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활동하다가 곤경에 처한 사서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지원단체이다. 재단은 제반 도서관 활동과 관련하여 사법적 곤경에 처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재판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언론·출판의 자유를 다루는 소송에 직접 참여하여 기본권옹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한다.

'리로이 메리트 인도주의기금'은 검열에 대한 반대와 지적자유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 사서인 리로이 메리트를 기념하여 독서자유재단이 1970년 설립한 공익기금으로, 지적자유관련 문제로 실직하거나 직장에 위협을 받는 사서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1969년 현직사서가 시교육위원회의 종교교육에 항의하는 학부모운동에 동참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호진(T.E. Hodgin)사건'으로 인해 생겨났던 '사서를 위한 전국자유기금'을 흡수하면서, 사서개인의 신념과 사회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이들의 지원을 어디까지 확대하여야 하는가

라는 운영상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1973년 발족한 '지적자유원탁회의'는 미국도서관협회 내에서 도서관의 지적자유와 관련한 제반활동, 수행프로그램, 문제사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협회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들의 지적자유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의사소통 기구이다. 동 원탁회의는 협회 내에서 지적자유에 관심을 둔 회원들의 자생 조직으로서, 지적자유와 관련한 각종 사안에 대한 여론수렴은 물론 협회의 관련활동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적자유와 관련한 현저한 업적에 대해 포상제도를 실시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원탁회의를 통해서 지적자유 관련 정책수행에서의 미국도서관협회의 책임의식을 독려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1994년에 활동을 개시한 '지적자유활동정보망'은 풀뿌리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임시조직망이다. 그들 지역에서 검열논쟁이 발생할 때는 기꺼이 독서의 자유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자발적 봉사조직으로 각 주마다 지적자유 문제에 대한 감시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 지역의 지적자유관련 활동을 정기적으로 사무국에 보고하고, 검열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사무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적극적인 후원자로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 조직활동의 소식지로는 당초 지적자유위원회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다가 지적자유사무국에서 1972년부터 간행하고 있는 [지적자유소식](Newsletter on Intellectual Freedom, 1952)과 지적자유활동정보망의 소식지인 [지적자유활동소식](Intellectual Freedom Action News, 1994)이 있다.

[지적자유소식]은 사서들과 지적자유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검열사건, 판례, 입법,

관련 출판물 등 지적자유와 관련한 전반적인 동향을 제공하는 소식지로서, 지적자유에 관한 제견해를 표명하는 장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물론 지적자유위원회, 지적자유사무국, 독서자유재단 등의 활동을 소개하는 매체로 주로 이용된다.

[지적자유활동소식]은 비공식 간이소식지로, 최근의 검열논쟁이나 지적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에 관한 최신정보를 소개하고, 지적자유문제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나 사안을 회원 및 후원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미국 이외에 지역에서 도서관의 지적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조직적 활동을 가장 먼저 시작한 국가가 일본이다. 일본도서관협회는 1954년 도서관 활동에서의 지적자유에 관한 원칙을 천명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야마구치현립도서관 사서의 자기검열적 도서방치 사건을 계기로 1974년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조사위원회'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調査委員會)를 상설기구로서 설치하여 도서관의 지적자유 문제에 대처하여 오고 있다. 동 위원회는 최근까지 '도서관과 자유' (圖書館と自由)라는 총서를 통해, 지적자유에 대한 관련문헌을 각종의 사례집과 참고자료로서 발간하고, 미국도서관협회에서 발행한 '지적자유 편람'의 개정판을 번역하여 출간하는 등 활발한 출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調査委員會 1997, 216-225).

최근 국제적인 규모에서 도서관의 지적자유에

대한 조직적 대응을 기대하게 하는 것은, 1997년 코펜하겐 국제도서관연맹 총회를 통해서 설치된 '정보접근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위원회' (CAIFE)의 출범이다. 동 위원회는 덴마크 정부의 지원으로 개설된 사무국을 통해 인터넷상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정확한 정보제공과 홍보활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 정보접근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연계활동과 학술적 및 실천적 대안 형성을 모색하는 기구로서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고문헌〉

- 鹽見昇. 1991. 知的自由の圖書館. 東京:青木書店.
 日本圖書館協會. 1997.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事例33選. 圖書館と自由シリーズ 第14集. 東京:同協會
 한인섭. 1997. “검열과 자유와 책임”. 철학과 현실, (봄) : 57-55
 ALA 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 1996. Intellectual Freedom Manual. 5th ed. Chicago:ALA.
 Celler, Evelyn. 1976. "The Librarian as Censor". Library Journal, 101(11): 1255-1258

-〈다음호에 계속〉-